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-04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1월 28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인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4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1. 23.

발 의 자: 장길천 의원

### 1. 제정이유

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,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정원문화 발굴·진흥 사업 및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
라.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마.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
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
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전화: 02-450-2842, FAX: 02-454-0438,

E-mail: suekyung17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